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농약으로서 제조, 판매, 사용을 금지 〉

Q

무등록농약, 농약의 등록제도 등 「등록」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등록이란 어떤 것입니까?

A

농약은 농약관리법에 의해 규제됩니다. 이 법률은 농약의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의 확립, 안전사용을 도모하고 농업생산과 생활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물론 1969년을 비롯한 수차례의 일부 개정에 이어 1977년과 1980년, 1995에는 전문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국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의 보전, 무등록 농약 및 잔류농약 대책 마련 등 강화된 내용의 법의 개정은 염중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약의 적정·안전사용 위한 기본적 틀

등록제도는 농약의 적정·안전한 사용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농약은 등록제도에 의해서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농약으로서 제조, 판매,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농약 등록 신청에는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와 함께 효력이나 작물에 대한 안전성 외에 독성 및 잔류성 등에 관한 다양한 시험 성적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 자료에 근거하여 농촌진흥청과 농업과학기술원에서의 품질, 약효, 농작물에의 안전성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의 검토·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부적당한 문제가 있으면 등록은 보류됩니다.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따라서 심사를 통과해 등록이 되어도 재등록 신청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또한 재등록에 있어서도 그 사이에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는 그에 대한 시험성적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등록은 제형별, 종목별, 회사별로 받아야 합니다. 등록을 받은 것은 그 농약을 사용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사용 기준으로서 용기에 첨부 된 표기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 등록된 농약을 사용기준에 따라서 〉

Q

무등록농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농약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까?

A

농약은 정해진 방법을 지켜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사용자가 마음대로 생각해서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농약관리법 개정에 의해 농약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약등록을 한 농약 이외의 약제를 방제를 목적으로 농작물 등의 생산(이 중에는 가정채원, 정원수, 녹지, 공원도 포함)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농약으로서의 효능이 있다고 하면서 농약 등록을 받지 않은 약제, 혹은 외국 또는 수입 대행업자로부터 구입한 우리나라의 농약등록을 받지 않은 약제(자재 등)를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등록을 받은 농약도 사용 기준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용대상작물과 병해충·잡초, 사용량, 사용 시기 등입니다. 농약의 상당수는 식료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 기준에 따라서 사용함으로서 최종적인 소비자의 안전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Ү

부정농약, 안전성·효능 검증 안돼

부정농약은 국내에서 안전성, 효능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약해 등 농작물 피해 및 농경지 오염 또는 인축에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대 취급하여서는 안되며 농촌진흥청 또는 시·군(단속공무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